

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98. 7. 24 문팔갑의원외 4인
- 나. 회 부 일 자 : 98. 7. 30
- 다. 상 정 일 자 : 98. 7. 30(제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문 현 근

나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14877호('95. 12. 30)로 개정 공포되어 “일비”가 “회의수당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제2호중 <“일비”라함은 영 제15조 의한 “일비”를 말한다>에서 <“회의수당” 이라함은 영 제15조의 “회의수당”을 말한다>로한다.
-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“일비”를 “회의수당”으로 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, 안 제2조, 제2호중 “일비”를 “회의수당”으로,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“일비”를 “회의수당”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,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호중 "일비"라 를 "회의수당"이라 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현행	변경
<p>제2조(정의) 생략</p> <p>1~2 (생략)</p> <p>2. 생략</p> <p>3. "<u>일비</u>"라 함은 영 제15조에 의한 <u>일비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~2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 <p>3. "<u>회의수당</u>"이라 함은 영 제15조 <u>회의수당을 말한다.</u></p>
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생략</p> <p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원 당해년도 <u>일비</u>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 경우 는 의원 당해년도 <u>일비</u>의 1년분 에 상당한 금액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현행과 같음</p> <p>1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회의수당</u> - - - - - -</p> <p>2. - - - - - - - - - - <u>회의수당</u> - - - - - 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